

제172회 영등포구의회
2012년도 제2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관리기금의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12. 12. 10.

社 會 建 設 委 員 會

專 門 委 員 朴 鍾 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관리기금의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168호로 2012년 11월 14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운영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재난발생시 긴급하게 필요한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함.(안 제6조제7호)

4.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재난피해자들의 심리안정지원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하여 상담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재난관리기금에서 사용 할 수
있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시행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임.

○ 주요내용을 보면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신설
(안 제6조제7호)

○ 최근 이상 기후에 따른 자연재해와 도시화, 산업화로 재난이 대형화, 복잡화됨에 따라 물질적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자가 증가하고 있어 재난충격 후유증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2006년부터 재난을 당한 국민의 심리적 충격을 해소·완화하고자 재난심리지원제도를 추진하고 있으나 각종 재난이 잦고 이에 따른 심리상담 수요도 늘어나고 있어

재난피해자의 심리적 안정 지원에 필요한 상담활동 비용을 재난관리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또한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따라 현 조례에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5.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 예산조치 필요 없음

다. 타구 개정 현황 : 중구

관 련 법 령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2(재난피해자에 대한 상담 활동 지원절차) ① 소방방재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상담활동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재난 및 피해 유형별 상담 활동의 세부 지원방안
2.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전문가 연락체계 구축
3. 상담 활동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4. 그 밖에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활동 지원에 필요하다고 소방방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소방방재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상담 활동 지원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2.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이 발생한 지역

제74조(재난관리기금의 용도) 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2.8.23>

1. 법 제3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재난과 관련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 가.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 나.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시설의 설치(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재난 예보·경보시설의 설치로 한정한다) 및 보수·보강

다. 재난피해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라. 지방자치단체의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마.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용자

바.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사.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2. 법 제3조제1호다목의 재난 중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제75조(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법 제67조에 따라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67조에 따라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의 법정 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15 이상의 금액은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는 제74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따라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